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.

발 의 자:양부남·조 국·박지원

정진욱 • 전현희 • 정준호

이재관 • 복기왕 • 박지혜

안규백 · 서삼석 · 민형배

권향엽 • 박희승 • 이성유

채현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,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한 권한이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·감독이 필요하다는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.

현행법은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, 정보시스템을 통한 행정정보의 취급 실태와 처리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·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취급

·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, 행정정보의 이용자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 신설, 제78조제1항등).

법률 제 호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행정정보 취급·이용의 확인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·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보의 취급·이용자가 제35조 각 호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급·이용행위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·이용 현황 확인 주기, 자료 제출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장의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.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행정정보 취급·이용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2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정정보 취급·이용 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35조의2(행정정보 취급·이용 의확인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·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취급·이용자가 제35조 각 호에 따른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급·이용행위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거나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없다.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취급·이용현황 확인 주기, 자료 제출 절차・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
제7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78조(과태료) ①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u>1. · 2.</u> (생 략)

② (생략)

----.

- 1.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장의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
- 2.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
- 3.·4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